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호진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854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2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2. 제안사유

○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운수종사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사고처리 등을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함

○ 이에 현행 「도로교통법」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 긴급 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토록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규정을 조례에 명시토록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5조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　　간 : 2020. 8. 26. ~ 9. 2.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) : 원안가결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 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의 사고 발생 시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응급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와 법인택시 간의 교통사고 이후 부적절한 사고조치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[1]을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택시운전자 의무사항에 긴급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

---

1) 응급환자 후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'구속'(한계레, 2020.7.24.자 보도자료 외 다수)
-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경 서을시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응급환자(암 투병)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차선 변경 중 법인 택시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이며, 택시 운전자와 구급차 운전자간의 사고 조치 문제로 구급차 운행이 10여분 지체되었으며 이후 병원도착 5시간만에 환자가 사망함
- 이에 유족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(2020.7.3. 총 참여인원 735,972명)함에 따라 해당 택시기사가 검찰에 '구속기소'된 사건임

○ 현행「도로교통법」제54조에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의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「도로교통법」제54조를 위반하여 해당 차량을 막아서는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

※ 참고 : 「도로교통법」관련 규정

제54조(사고발생 시의 조치)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**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(이하 "교통사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(이하 "운전자등"이라 한다)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**

1.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

2.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(성명·전화번호·주소 등을 말한다.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) **제공**

②~④ 생략

⑤ 긴급자동차,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,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**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.** ⑥ 생략

○ 따라서, 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발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운전자에게 생명존중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식을 장려하기 위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
○ 다만, 택시 운전자가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시 사업개선명령 등을 통해 적극 시행을 독려하거나

조례 제10조의 3(재정지원의 대상자의 제한)[2]과 제12조(교육 및 홍보)[3]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, 의무사항 위반 시 서울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

---

2) **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 제10조의3(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)**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**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.**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%에 해당하는 경우
2. 법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.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3.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
4. **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**

3) **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 제12조(교육 및 홍보)**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